

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,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결과의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)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

존속기간 중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이에 대한 결과를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9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23.10.4.	24.5.22.	-	-	-	24.3.22.	23.9.21.	24.7.12.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3.10.11.	23.11.3.	23.12.29.	-	-	-	24.11.11.	-

나. 조문별 검토

- ‘안 제1조’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- ‘안 제2조’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,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시설공사”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8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로 규정함.
- ‘안 제3조’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합의회행정기관 등의 충청북도 행정기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로 함.
- ‘안 제4조’는 본 조례상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.
- ‘안 제5조’는 하자 검사 후 작성된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- ‘안 제6조’는 하자 통합 이력 관리,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및 하

자 검사 이력 입력·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.

- ‘안 제7조’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책임자 지정, 전문기관 위탁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.
- ‘안 제8조’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의 통계 작성·관리 및 공시에 관하여 규정함.
- ‘안 제9조’는 하자검사 결과, 하자보수 요청 현황·조치 결과 등의 충청북도의회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,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시설공사”의 대상이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 체결할 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,
-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통합 이력 관리 및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한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